

제2023-64호 2023년 7월 13일(목)	 시 보 여수시	시정지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기 타

여수시 규칙	제815호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공무원경고등 처분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여수시 규칙	제816호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
여수시 규칙	제817호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4
여수시 규칙	제818호	여수시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38

회							
---	--	--	--	--	--	--	--

제8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공무원경고등 처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3 일

여 수 시 장 2023.7.13


여수시 규칙 제815호

붙임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공무원경고등 처분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공무원경고등 처분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처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를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 훈계”를 “· 훈계 · 주의”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한다.

②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면책제도 전 과정을 지원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의 상급기관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2. 피 감사자가 제출한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인사위원회 등에 배석하여 의견 진술
3. 그 밖의 면책제도 과정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제5조제3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 제47조”로 한다.

제8조 중 “감사반장은 감사 중”을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시작”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당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직권면책)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갖추
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훈계는 기관장”을 “훈계와 주의는 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의는 훈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전에 감사담당관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한 처분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야 한다.

제17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무원 등” 이란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또는 단체·개인을 말한다.	4. -----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 ----- -----.
5. “경고 등 처분” 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 · 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5. ----- ----- ----- ----- ----- -----. · 훈계 · 주의----- -----.
<신 설>	제4조의2(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으로 지정한다.

②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적극 행정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면책제도 전 과정을 지원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의 상급기관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2. 피 감사자가 제출한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인사위원회 등에 배석하여 의견 진술

3. 그 밖의 면책제도 과정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은 대상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반장은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 제47조-----

----.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담당관
은 자체감사 시작 -----

<p>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u>별지 제1호 서식</u>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p>	<p>----- --- <u>별지 제1호서식</u>----- -----.</p>
<p>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피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u>당해</u>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 할 수 있다.</p>	<p>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 ----- ----- <u>해당</u> ----- -----.</p>
<p>② ·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u>별지 제2호 서식</u>에 따라 <u>당해</u>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별지 제2호서식</u>에 따라 <u>해당</u> ----- -----. ----- ----- -----.</p>
<p>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담당관은 제9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u>별지 제3호 서식</u>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p>	<p>제10조(면책심사 처리) ----- ----- ----- <u>별지 제3호 서식</u>----- ----- -----. ----- ----- ----- -----.</p>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

제10조의2(직권면책) 감사담당관

은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
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면책신청
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 ① (생략)
-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생략)

-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생략)

-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별지 제4호서식
---.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 ② ----- 별지 제5호서식
-----.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현행과 같음)

- ② ----- 훈계와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기관 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 설>

제16조(처분사유) (생 략)

<신 설>

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시장이 행한다. 단,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 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

주의는 기관장 -----

-----.

③ 주의는 훈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16조(처분사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전에 감사담당관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한 처분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처분권자) -----

----- 해당 -----

-----.

제18조(처분방법) -----

----- 별지 -----
제6호 서식 -----

으로써 한다.	-----.
제19조(기록유지) 시장은 경고 등 처분상황을 <u>별지 제7호 서식</u> 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유지) ----- ----- <u>별지 제7호서식</u> ----- -----.

제8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만리에 한하는 조례

2023년 7 월 13 일

여 수 시 장

2023.7.13



여수시 규칙 제816호

붙임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만리에 한하는 조례

여수시 규칙 제816호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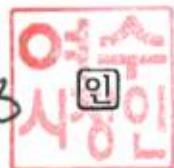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삭 제>
별지 제1호 서식 (생 략)	별지 제1호 서식 <삭 제>

제8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3 일

여 수 시 장 2021.07.13



여수시 규칙 제817호

붙임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제목의 “요트시설”을 “요트마리나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감증명서 1부”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로,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각 1부”를 “법인인감 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로,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한번만”을 “한 차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운영위원회”를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 조건 및 관리·운영상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이 수납 보관할 수 있고, 수납 다음 날까지 세입 결의하여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각 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여수시”를 “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 별지 제12호 서식”을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요트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보칙”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8조) 중 “요트 마리나”를 “요트마리나 시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
지를 각각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자 준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요트마리나 시설 내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입장할 수 없습니다.계류장 출입 시에는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시장(관리자)의 출입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격이 없는 자는 “자격이 있는 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요트마리나 시설 내에서 사전허가 없이 물건을 판매, 전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요트마리나 시설 내에는 신나 등 필요 이외의 위험물질을 반입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되며, 화기는 소정의 장소 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마리나선박 계류 시 발생될 수 있는 음식물 및 생활 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해상에 투기하거나 계류장 내에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항계 내에서의 항행은 반드시 동력(기관)에 의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뜻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시장 또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계류장 수역 내에서 수영을 하거나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마리나선박을 세척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세척시설을 이용하여야 합니다.사용허가를 받은 요트 소유자는 허가받은 선석에 피허가자명과 선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계류시설의 이용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사용을 제한합니다. 단, 야간항해 장비를 갖추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입·출항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계류시설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 등으로 불법영업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와 함께 관계법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외국 선적 요트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계류시설 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선박에 관한 관련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요트마리나 시설 및 그 부속시설 또는 다른 사람의 선박과 물건 등을 파손한 때에는 즉시 시장(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그밖에 시장(관리자)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E-mail			
사용시설					
사용기간	20 . . . ~ 20 . . . (일, 월간)				
사용목적					
대상선박 · 레저기구	선박명칭		등록번호		
	선박종류		제원	길이	
	총톤수/국적	t/		너비	
	추진기관			깊이	
관리 대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호 (주 소)		전화번호		
비고	○ 외국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관리대행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 및 관리 대행자 신분증) 2. 선박국적증서 1부 또는 수상레저등록증과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각 1부 3.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1부 4.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1부 5. 관리대행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소유자 서명 또는 날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E - m a i l
	주 소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변 경 사 항			
변 경 내 용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비 고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2. 요트마리나시설 사용 허가증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 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허가증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선박 · 레저기구	선박명칭		등록번호	
	선박종류		길이	
	총톤수/국적	t/	제원	너비
	추진기관			깊이
허가번호		사용선석체	-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20 . . . ~ 20 . . . (일, 월간)			
사용료	구분금액	합계		
제한또는조건	뒤쪽 참조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요트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여수시장(인)

[별지 제4호서식]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허가대장

사 용 허 가 번 호	피 허 가 자				사용시설		허가 기간	사용료		대상선박 · 레저기구					관리대행자			변 경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설명칭	사용선택		구 분		합계 (원)	선박명칭	등록번호	선박종류	길이 (m)	총 톤수 (t)	국적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일시	내역	
								상시	일시													

[별지 제5호서식]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확인서

성명			주소		
사용선박·레저기구	선명		길이		톤수
사용시설					
경기(행사)명					
사용일시	20 . . . ~ 20 . . . (일, 월간)				
부대시설					
특기사항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성명 (인)

여수시장

[별지 제6호서식]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해지 신고서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허가번호		사용선석체호		
해지일자				
해지사유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해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2.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7호서식]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 운영 위탁신청서

신청인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희망시설명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 ·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 사무처리 실적 등 1부	

[별지 제8호서식]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 운영 위탁 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간	당초		연장
사유			
희망시설명			

당사(개인 또는 단체)가 수탁관리 · 운영하는 위의 요트마리나의 관리 · 운영 기간을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관리 · 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9호서식] <종전의 서식 10호에서 이동>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 용 구 분		
사용 시설명 또는 사용 내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	20 . . . ~ 20 . . . (일, 월간)	
감 면 요 청 사 유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감면사유에 따라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 1부	

[별지 제10호서식] <종전의 서식 11호에서 이동>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No.

신청인	주 소	()	
	성 명	생년월일	
	단체명 (대표자)	관계	
허가내용	사용허가시설	허가번호 (사용권번호)	
	사용일시	. . . ~ . . .	(일, 월간)
	사용료	수납일	년 월 일
허가신청 취소사유			
반환금 산출내역		반환금액	금 원 (₩)

- | | |
|------|----------|
| 입금계좌 | ○ 은행명 : |
| | ○ 계좌번호 : |
| | ○ 예금주명 : |

위와 같이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종전의 서식 12호에서 이동>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료 반환 관리대장

연 번	일 자	청 구 인		사 시 설 명	반환 청구 사유	반환금	결재			비고
		성 명	주 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u>별지 제1호 서식</u> 또는 <u>별지 제2호 서식</u> 을 작성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u>별지 제3호 서식</u> 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u>별지 제4호 서식</u> 의 사용 허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사용자가 사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u>별지 제5호 서식</u> 에 따라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	제2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 ----- ----- ----- <u>별지 제1호서식</u> 또는 <u>별지 제2호서식</u> ----- ----- ----- ----- ----- . ② ----- ----- ----- ----- ----- <u>별지 제3호서식</u> ----- ----- ----- . ③ ----- ----- ----- <u>별지 제4호서식</u> ----- ----- ----- ----- <u>별지 제5호서식</u> ----- -----

현 행	개 정 안
여야 한다.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사용 해지) 조례 제4조 에 따라 요트마리나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을 사용 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조례 제8조에 따라 <u>별 지 제6호 서식</u> 에 따른 시설사용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 해지) ----- ----- ----- ----- ----- ----- ----- ----- <u>별지 제6호서식</u> ----- -----.
제7조(<u>요트시설의 운영관리</u>) ① (생략) 1. · 2. (생 략)	제7조(<u>요트마리나 시설의 운영관 리</u>)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기타</u> : 시설물 도색 등 공공 시설물 유지 보수비	3. <u>그 밖의 사항</u>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운영) ① (생 략)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 는 자는 <u>별지 제7호 서식</u> 의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u>인감증명서 1부</u> (법인인 경우 에는 <u>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 명서 각 1부</u> , 법인이 아닌 단	제8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 음) ② ----- ----- <u>별지 제7호서식</u> -- ----- ----- 1. <u>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u> -- -- <u>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 기부등본 각 1부</u> -----

현 행	개 정 안
<p>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u>인감증명서와</u>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p> <p>2. ~ 4. (생 략)</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 조건 및 관리·운영상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트마리나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u>한번만</u>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u>별지 제8호 서식</u>의 연장신청서를 위탁기간 만</p>	<p>----- <u>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u> -----</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 조건 및 관리·운영상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u>한 차례</u> ----- ----. ----- -----.</p> <p>⑥ ----- ----- <u>별지 제8호서식</u>-----</p>

현 행	개 정 안
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u>운영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 ----- <u>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u> ----- -----.
제13조(사용료) ① (생 략) <u>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 하여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u>	제13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4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생 략) <u>② 사용료는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공무원이 수납 보관할 수 있고, 수납 다음 날까지 세입 다음 날까지 세입 결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u>	제14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u>② 사용료는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공무원이 수납 보관할 수 있고, 수납 다음 날까지 세입 결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u>
제15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 비율은 50퍼센트,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은 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특별	제15조(사용료 감면) ① ----- ----- ----- -----

현 행	개 정 안
사유 및 그에 따른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 단,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각 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1. (생 약)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50퍼센트	2. -----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 • 4. (생 약) ②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u>별지 제10호서식</u> 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 4. (현행과 같음) ② ----- ----- <u>별지 제9호서식</u> ----- -----.
1. (생 약)	1. (현행과 같음)
2. <u>여수시</u> 통합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2. 시 ----- -----
3. • 4. (생 약) 제16조(사용료의 반환) ① (생 약)	3.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	② -----

현 행	개 정 안
<p>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u>별지 제11호 서식</u>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u>별지 제12호 서식</u>의 사용료 반환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 ----- <u>별지 제10호서식</u>----- -----. ③ ----- ----- ----- -- <u>경우 별지 제11호서식</u>----- ----- -----.</p>
<p><u>제7장 요트시설관리운영위원회</u></p> <p><u>제17조(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u></p> <p>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요트마리나 관련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전남 지역 요트 협회 임원 1명 3. 요트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 	<p><u>제7장 보착</u> <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u>명 이내</u></p> <p><u>②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요트마리나 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요트마리나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u></p> <p><u>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u></p> <p><u>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⑥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u>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u></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u>제18조(운영세칙) 요트 마리나 운</u> <u>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u> <u>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u> <u>여는 따로 운영규정 또는 협약</u> <u>서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u></p>	<p><u>제17조(운영세칙) 요트마리나 시</u> <u>설 -----</u> ----- ----- -----.</p>

제8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3 일

여 수 시 장 2023.7.13



여수시 규칙 제818호

붙임 여수시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반입 통제 기준

위 반 행 위	1차	2차	3차
1.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및 관련부서 통보	-	-
2. 폐기물 반입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	-
3. 폐기물 반입증(배출자, 배출장소, 배출량)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사업장 반입금지 30일	사업장 반입금지 60일	사업장 반입금지 120일
4. 계량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	-
5. 계량카드를 대여해주거나 대여한 경우	사업장 반입금지 1년	사업장 반입금지 2년	사업장 반입금지 3년
6. 여수시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반입한 경우	사업장 반입금지 1년	사업장 반입금지 2년	사업장 반입금지 3년
7. 반입수수료 또는 처분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납부 시까지 폐기물 반입금지	-	-
8. 폐기물 반입증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	-

비 고

- 사업장 반입금지의 대상범위는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해당 업체 및 운반자)로 한다.
- 폐기물 반입금지는 담당자가 계근 거부 조치하고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 사업장 반입금지 시 계량카드를 즉시 회수하고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반입 통제 차수의 산정은 반입 통제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5호, 제6호, 제7호의 경우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반입 금지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각각 적용한다.
- 경미한 사항의 경우 담당자가 폐기물 반출조치 및 계도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단순 착오 기재 등의 실수로 고의성이 없는 경우
 - 차량(암롤박스) 개방 시 육안상 확인하기 어려운 소량의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